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46637 판결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나46637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가소11299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한

담당변호사 강정목

변론 종결 2024. 10. 24.

판결 선고 2024. 11. 1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31. 선고 2023가소1129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윤영

판사오지영

판사양철순